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인적 손해배상 권리 및 손해배상금 양도·압류금지
규정 신설 〉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87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제2210187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인적 손해배상 권리 및 손해배상금 양도·압류금지 규정 신설 등 (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2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87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28.
3. 회 부 일 : 2025. 4.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인적 손해배상 권리 및 손해배상금 양도·압류금지 규정 신설 등(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개정안은 규제특례사업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23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① 제12조제10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u><신설></u>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압류 등의 금지) ① 제12조 제10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 제12조에 따르면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기준 등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¹⁾

1) 제12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한,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등을 제공하는 자는 그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등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현행법에 따른 책임보험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하위 법령²⁾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6조의2 제1항 제6호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중략)

⑨ 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등을 제공하는 자가 그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등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영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5-5호)

[별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범위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4.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또한 행정안전부는 ‘2024년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 평가’를 실시하여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근거 법률에 보험금 청구권 압류 등 금지 조항을 신설하도록 등의 개선 권고를 하였음.⁴⁾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를 정할 것
 2.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3.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에 해당함에도 가입을 게을리 한 자 또는 가입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보험회사, 공제회 등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할 것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가입의무자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7. 그 밖에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4)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관리·운영중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평가 후 평가대상의 적정성 검토 및 제도 미비점에 대해 기관별 개선 권고를 실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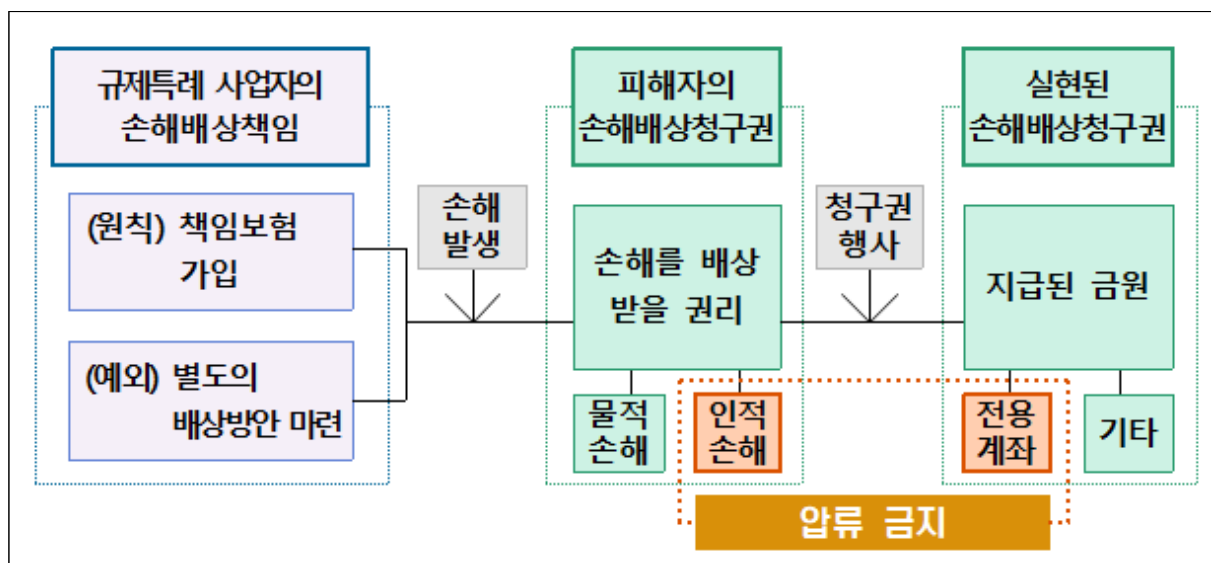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의3(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이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등의 분석·평가 결과 해당 재난안전의무보험 등이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권고,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에 대한 개선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실증특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를 신설하도록 하고, 인적·물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적 손해(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 포함)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손해배상금의 압류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피해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할 것임.

< 개정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및 압류 금지대상 >



자료 : 국토교통부

참고로, 관련 입법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보험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압류 등의 금지) ①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급여수급권 등은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으며, 수급계좌의 예금 중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 국세청은 납세자가 국세를 완납하지 못하여 체납한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등’은 체납자가 보유한 채권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다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국세징수법」 등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압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서 압류금지 재산으로 별도로 규정⁷⁾하고 있어 개정안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참고로, 규제샌드박스 책임보험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거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①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보험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7)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영세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대해 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인 예금을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측면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세징수법」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6건의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들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손해배상청구권 양도 금지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 >

연번	구분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발의일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2210188)	국토교통위원회	2025. 4. 28.
2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2210187)		2025. 4. 28.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2210192)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2025. 4. 28.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김성원 의원 (2210191)		2025. 4. 28.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김성원 의원 (2210186)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2025. 4. 28.
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김성원 의원 (2210189)	환경노동위원회	2025. 4. 28.

* 최종검색일 : 2025년 7월 8일

나. 관계 부처 의견

1) 국토교통부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중 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에 동의함.

2) 국세청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체납자가 보유한 채권에 대해 조세 채권금액을 한도로 압류를 할 수 있음.

납세자가 국세를 완납하지 못하여 체납한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등’은 체납자가 보유한 채권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다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국세징수법」 등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압류를 할 수 있어야 함.

참고로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영세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대해 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에 대해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575

참고

2024년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 평가결과 관련 자료

연 번	소관부처 (관련 법령)	보험명 (가 칭)	재난안전법 충족 대상 항목				
			적정 보상 한도	가입확 인 및 점검 체계	미 가입자 제재체 계	보험사 계약체 결 거부제 한	보험금 청구권 압류금 지
	6개 부서	6종 17건	1건	2건	2건	6건	6건
1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2023.10.19. 시행	·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보험 (모빌리티 신기 술· 서비스)	충족 (1.5억원)	충족 (증빙자 료 제출)	충족 (과태료 1천만원)	미흡 (없음)	미흡 (없음)